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라 법무부 인력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 인력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3명, 8급 29, 9급 34명)을 감축하고,

법무부 본부에 법률구조기구 관리·연계 강화 국정과제 수행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급증에 따른 집행감독 현장인력 20명(6급 4명, 7급 6명, 8급 5명, 9급 5명),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교정기관 급식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1명), 성폭력 등 고위험범죄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자감독인력 32명(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 교도소 등의 야간교대근무 체계 개편을 위해 필요한 인력 20명(6급 2명, 7급 2명, 8급 8명, 9급 8명), 가석방 심사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1명, 7급 1명, 8급 4명, 9급 4명), 가석방 대상자 심층면접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수용자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2명(6급 5명, 7급 7명, 8급 10명),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전자여행허가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따른 운영 인력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는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전자여행허가센터를 평가기간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하는 평가대상조직으로 추가하며, 성폭력 등 고위험범죄자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해 증원한 인력 32명(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을 평가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평가대상 정원으로 추가하고,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중 불법체류외국인 관리를 위해 증원한 인력 154명(6급 26명, 7급 47명, 8급 45명, 9급 36명),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해 증원한 인력 52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4명, 9급 14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을 위해 증원한 인력 50명(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을 평가 결과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 연장하며, 소년수용자 관리를 위해 증원한 인력 42명(6급 6명, 7급 12명, 8급 13명, 9급 11명), 항만 국경관리를 위해 증원한 인력 33명(6급 11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5명)을 평가결과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9급 6명)을 기술직군 정원 5명(9급 5명)과 출입국관리직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며,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의 결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무직 3명(4급 3명)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4·5급 3명)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며, 법무부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심의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고 대신 인권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과장 및 전자비자센터장”을 “과장, 전자비자센터장 및 전자여행허가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자여행허가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적으로 신청한 사전여행허가(이하 “전자여행허가”라 한다)에 관한 사무
2. 전자여행허가 신청 승객의 정보 분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전자여행허가센터의 운영
4. 그 밖에 전자여행허가 민원 안내, 홍보 등 전자여행허가와 관련된 사항

제3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1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8명, 5급 2명)”을 “1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8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명)”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원 중 의무직 3명(4급 또는 5급 3명)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3조제9항제5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원 중 5명(8급 5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4조제1항 중 “법무심의관”을 “인권국장”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 전자여행허가센터
----------------	---------------

별표 5 중 총계 “778”을 “772”로 하고, 일반직 계 “741”을 “735”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25”를 “24”로 하고,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교정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삭제하며, 교감 “33”을 “32”로, 출입국관리주사 “38”을 “37”로, 행정주사·검찰주사 또는 보호주사 “2”를 “3”으로, 보호주사보 “12”를 “11”로, 검찰주사보 “11”을 “10”으로, 운전서기보 “10”을 “9”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778”을 “772”로 하고, 일반직 계 “741”을 “735”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25”를 “24”로 하고,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교정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삭제하며, 교감 “33”을 “32”로, 출입국관리주사 “36”을 “35”로, 행정주사·검찰주사 또는 보호주사 “2”를 “3”으로, 보호주사보 “9”를 “8”로, 검찰주사보 “11”을 “10”으로, 운전서기보 “10”을 “9”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139”를 “138”로 하고, 일반직 계 “120”을 “119”로 하며, “기계운영서기 1”을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656”을 각각 “16,668”로 하고, 의무사무관 “25”를 “24”로, 교감 “1,448”을 “1,443”으로, 식품위생주사 “12”를 “13”으로, 간호주사 “33”을 “38”로, 교위 “1,821”을 “1,819”로, 식품위생주사보 “32”를 “35”로, 간호주사보 “55”를 “62”로, 교사 “5,636”을 “5,635”로, 식품위생서기 “22”를 “24”로, 간호서기 “75”를 “85”로, 교도 “6,126”을 “6,119”로, 공업서기보 “84”를 “86”으로, 식품위생서기보 “16”을 “17”로, 기계운영서기보 “19”를 “17”로, 사무운영서기보 “8”을 “7”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56”을 각각 “453”으로 하고, 기술서기관 “16”을 “13”으로 하며, 그 다음에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3”을 신설하고, 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2”를 “1”로, 보호서기 “4”를 “3”으로, 운전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92”를 각각 “984”로 하고, 보호주사 “108”을 “106”으로, 보호주사보 “194”를 “191”로, 보호서기 “194”를 “193”으로, 보호서기보 “174”를 “172”로, 공업서기보 “15”를 “16”으로, 열관리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02”를 각각 “2,037”로 하고, 보호주사 “333”을 “343”으로, 보호주사보 “463”을 “477”로, 보호서기 “472”를 “484”로, 운전서기보 “60”을 “59”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583”을 각각 “2,576”으로 하고, 출입국

관리사무관 “103”을 “104”로, 출입국관리주사 “438”을 “437”로, 출입국관리주사보 “695”를 “692”로, 출입국관리서기 “689”를 “686”으로, 출입국관리서기보 “511”을 “512”로, 공업서기보 “4”를 “6”으로, 방호서기보 “7”을 “6”으로 하며, “기계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3”을 “12”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583”을 각각 “2,576”으로 하고, 출입국관리사무관 “115”를 “116”으로, 출입국관리주사 “426”을 “425”로, 출입국관리주사보 “695”를 “692”로, 출입국관리서기 “689”를 “686”으로, 출입국관리서기보 “511”을 “512”로, 공업서기보 “4”를 “6”으로, 방호서기보 “7”을 “6”으로 하며, “기계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3”을 “12”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	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	1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2025년 9월 30일까지

별표 13 제2호나목1)의 평가기간란, 3)의 평가기간란 및 7)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목 8)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목 9)의 평가기간란 및 10)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목 11)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2명 (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생략)
 ⑨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공무원 정원 중 5명(8급 5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1. 2. (생략)

3.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의무직 11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8명, 5급 2명), 간호직 2명(4급 1명, 5급 1명), 보호직 1명(6급 1명), 전문경

한다)에 관한 사무

2. 전자여행허가 신청 승객의 정보 분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전자여행허가센터의 운영

4. 그 밖에 전자여행허가 민원 안내, 홍보 등 전자여행허가와 관련된 사항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후단 삭제>

1. 2. (현행과 같음)

3. -----
 ----- 1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8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명)-----

력관 가군(의료시설 담당) 1
명,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명 <후단 신설>

4. (생략)

5.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2명(6급 또는 7급 2명), 의무직 3명(5급 3명),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5명(8급 5명) <후단 신설>

6. (생략)

제3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라 감찰

----- . 이 경우 정원 중 의
무직 3명(4급 또는 5급 3명)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고, 그 직위의 직무등
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4. (현행과 같음)

5. -----

-----. 이 경우 정원 중
5명(8급 5명)을 임기제공무원
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공무
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으로 임용한다.

6. (현행과 같음)

제34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

관, <u>법무심의관</u>, 송무심의관, 국 립법무병원장 및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을 말한다. ② (생 략)	-- <u>인권국장</u>----- ----- -----. ②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78</u>	<u>772</u>	-6
·	·	·	
·	·	·	
일반직 계	<u>741</u>	<u>735</u>	-6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u>25</u>	<u>24</u>	-1
·	·	·	
·	·	·	
<u>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 교</u>			
<u>정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u>			
<u>설사무관</u>	<u>1</u>	<삭 제>	-1
·	·	·	
·	·	·	
교감	<u>33</u>	<u>32</u>	-1
·	·	·	
·	·	·	
출입국관리주사	<u>38</u>	<u>37</u>	-1

·	·	·	
·	·	·	
행정주사·검찰주사 또는 보 호주사	<u>2</u>	<u>3</u>	+1
·	·	·	
·	·	·	
보호주사보	<u>12</u>	<u>11</u>	-1
검찰주사보	<u>11</u>	<u>10</u>	-1
·	·	·	
·	·	·	
운전서기보	<u>10</u>	<u>9</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78</u>	<u>772</u>	-6
·	·	·	
·	·	·	
일반직 계	<u>741</u>	<u>735</u>	-6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u>25</u>	<u>24</u>	-1
·	·	·	
·	·	·	
<u>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 교</u>			
<u>정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u>			
<u>설사무관</u>	<u>1</u>	<u><삭 제></u>	-1
·	·	·	
·	·	·	
교감	<u>33</u>	<u>32</u>	-1
·	·	·	
·	·	·	
출입국관리주사	<u>36</u>	<u>35</u>	-1

·	·	·	
·	·	·	
행정주사·검찰주사 또는 보 호주사	<u>2</u>	<u>3</u>	+1
·	·	·	
·	·	·	
보호주사보	<u>9</u>	<u>8</u>	-1
검찰주사보	<u>11</u>	<u>10</u>	-1
·	·	·	
·	·	·	
운전서기보	<u>10</u>	<u>9</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6]

법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9</u>	<u>138</u>	-1
일반직 계	<u>120</u>	<u>119</u>	-1
·	·	·	
·	·	·	
<u>기계운영서기</u>	<u>1</u>	<u><삭 제></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656</u>	<u>16,668</u>	+12
일반직 계	<u>16,656</u>	<u>16,668</u>	+12
·	·	·	
·	·	·	
의무사무관	<u>25</u>	<u>24</u>	-1
·	·	·	
·	·	·	
교감	<u>1,448</u>	<u>1,443</u>	-5
·	·	·	
·	·	·	
식품위생주사	<u>12</u>	<u>13</u>	+1
·	·	·	
·	·	·	
간호주사	<u>33</u>	<u>38</u>	+5
·	·	·	
·	·	·	
교위	<u>1,821</u>	<u>1,819</u>	-2
·	·	·	

·	·	·	
식품위생주사보	<u>32</u>	<u>35</u>	+3
·	·	·	
간호주사보	<u>55</u>	<u>62</u>	+7
·	·	·	
·	·	·	
교사	<u>5,636</u>	<u>5,635</u>	-1
·	·	·	
·	·	·	
식품위생서기	<u>22</u>	<u>24</u>	+2
·	·	·	
간호서기	<u>75</u>	<u>85</u>	+10
·	·	·	
·	·	·	
교도	<u>6,126</u>	<u>6,119</u>	-7
공업서기보	<u>84</u>	<u>86</u>	+2
식품위생서기보	<u>16</u>	<u>17</u>	+1
·	·	·	
·	·	·	
기계운영서기보	<u>19</u>	<u>17</u>	-2
·	·	·	

• 사무운영서기보 • •	• <u>8</u> • •	• <u>7</u> • •	-1
---	--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8]

국립법무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456</u>	<u>453</u>	-3
일반직 계	<u>456</u>	<u>453</u>	-3
·	·	·	
·	·	·	
기술서기관	<u>16</u>	<u>13</u>	-3
<u>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u>	<u><신 설></u>	<u>3</u>	+3
·	·	·	
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u>2</u>	<u>1</u>	-1
·	·	·	
·	·	·	
보호서기	<u>4</u>	<u>3</u>	-1
·	·	·	
·	·	·	
운전서기보	<u>3</u>	<u>2</u>	-1
·	·	·	
·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992</u>	<u>984</u>	-8
일반직 계	<u>992</u>	<u>984</u>	-8
·	·	·	
·	·	·	
보호주사	<u>108</u>	<u>106</u>	-2
·	·	·	
·	·	·	
보호주사보	<u>194</u>	<u>191</u>	-3
·	·	·	
·	·	·	
보호서기	<u>194</u>	<u>193</u>	-1
·	·	·	
·	·	·	
보호서기보	<u>174</u>	<u>172</u>	-2
공업서기보	<u>15</u>	<u>16</u>	+1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7</u>	<u>6</u>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1]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002</u>	<u>2,037</u>	+35
일반직 계	<u>2,002</u>	<u>2,037</u>	+35
•	•	•	
•	•	•	
보호주사	<u>333</u>	<u>343</u>	+10
•	•	•	
•	•	•	
보호주사보	<u>463</u>	<u>477</u>	+14
•	•	•	
보호서기	<u>472</u>	<u>484</u>	+12
•	•	•	
•	•	•	
운전서기보	<u>60</u>	<u>59</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2]

출입국 · 외국인청, 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583</u>	<u>2,576</u>	-7
일반직 계	<u>2,583</u>	<u>2,576</u>	-7
·	·	·	
·	·	·	
출입국관리사무관	<u>103</u>	<u>104</u>	+1
·	·	·	
·	·	·	
출입국관리주사	<u>438</u>	<u>437</u>	-1
·	·	·	
·	·	·	
출입국관리주사보	<u>695</u>	<u>692</u>	-3
·	·	·	
·	·	·	
출입국관리서기	<u>689</u>	<u>686</u>	-3
·	·	·	
·	·	·	
출입국관리서기보	<u>511</u>	<u>512</u>	+1

공업서기보	<u>4</u>	<u>6</u>	+2
•	•	•	
•	•	•	
방호서기보	<u>7</u>	<u>6</u>	-1
<u>기계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u>열관리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사무운영서기보	<u>13</u>	<u>12</u>	-1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2의2]

출입국 · 외국인청, 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2,583	.	2,576	-7	
일반직	계		2,583	.	2,576	-7	
	.		.	.	.		
	.		.	.	.		
출입국관리사무관			115	.	116	+1	
	.		.	.	.		
	.		.	.	.		
출입국관리주사			426	.	425	-1	
	.		.	.	.		
	.		.	.	.		
출입국관리주사보			695	.	692	-3	
	.		.	.	.		
	.		.	.	.		
출입국관리서기			689	.	686	-3	
	.		.	.	.		
	.		.	.	.		

출입국관리서기보	<u>511</u>	<u>512</u>	+1
공업서기보	<u>4</u>	<u>6</u>	+2
·	·	·	
·	·	·	
방호서기보	<u>7</u>	<u>6</u>	-1
<u>기계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u>열관리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사무운영서기보	<u>13</u>	<u>12</u>	-1